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73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통영시

소송대리인 B, C, D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장민관

변론 종결2021. 11. 24.

판결 선고2022.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 3.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8,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0. 2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0.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8년경부터 E 정비공사 구역 중 일부로 편입되었고, 소하천정비법이 정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토지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으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20. 10. 19.부터 2021. 9. 2.까지의 부당이득액 192,376원 및 그 이후의 월 18,400원으로 계산한 부당이득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소유자는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하천 관리청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9441 판결 등 참조).1) 나.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이상 그 소유자인 원고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 하여도, 소하천정비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하천관리청인 피고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병호

별지

1)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사권(私權)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로, 도로 설치로 인한 토지 사용권 제한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528 판결('원심이 인정한 본건 토지위의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이거나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이라면 피고는 도로시설한 본건 토지를 사용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부당이득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다.') 등 참조.